##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12

발의연월일: 2021. 1. 12.

발 의 자:이 용・金炳旭・김예지

신원식 • 이주환 • 배준영

조경태 · 정희용 · 최승재

지성호 · 김태호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이러한 사업을 국가예산으로만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긴급한 국외경매 등을 통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는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여 기부금 접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 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기부금 접수 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69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 ⑦ (생 략)	설립) ① ~ ⑦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u>⑧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기</u>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
	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
	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u>수 있다.</u>
<u>&lt;신 설&gt;</u>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u>&lt;신 설&gt;</u>	⑩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제8
	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
	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